

협회소식_ kira news

이사회

제12회 이사회

2009년도 제12회 이사회가 지난 12월 9일 오후 1시 대명솔비치리조트 피카소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2010년도 협회 주관 주요행사 개최에 관한 건과 한국건축가협회 성명서에 관한 건, 2010년도 밴쿠버올림픽 선수촌 강연회 개최에 관한 건, 건축관련학과 교수의 특별회원 영입에 관한 건을 논의 했으며, 부의안건으로 회계규정 개정의 건, 제44회 정기총회 일자 결정의 건,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의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의안 : 2010년도 협회 주관 주요행사 개최에 관한 건
 -2010년 10월을 축제기간으로 하여 협회 주관 주요행사를 동시에 개최하고, 모든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함.
- 제2호 : 한국건축가협회 성명서에 관한 건
 -2009년도 하반기 협회발전 워크숍 분임토의 결과를 토대로 성명서에 대한 회신문을 작성하기로 함.
- 제3호 : 2010년도 밴쿠버올림픽 선수촌 설계자 강연회 개최에 관한 건
 -원안대로 개최하기로 함.
- 제4호 : 건축관련학과 교수의 특별회원 영입에 관한 건
 -특별회원으로 입회신청한 53명의 가입

건은 입회비 및 월회비 등을 포함하여 차기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이사회 승인 후 내년 2월 총회에서 특별회원증 수여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회계규정 개정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제44회 정기총회 일자 결정의 건
 -제44회 정기총회는 2010년 2월 25일 (목) 10시에 개최하기로 함.
- 제3호의안 : 2010년도 1~2월 임시예산(안) 승인의 건
 -협의사항 제3호의 결과에 따라 재경위원회 조정안대로 임시예산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함.
 ▷일반회계 임시예산안 조정안
 - 교육연수사업비 : 1,000,000원(당초) ⇒ 4,000,000원(변경)
 - 예비비 : 9,560,000원(당초) ⇒ 6,560,000원(변경)
- 제4호의안 :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5호의안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장은 이철호 고문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기로 함.
- 제6호의안 :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회 명칭은 '통합추진위원회'로 하고, 아래와 같이 9명의 위원을 선임함.
 ▷위원 : 강성익, 김영수, 박재웅, 백승천, 신정철, 신준규, 장양순, 전영철, 정태복

위원회 개최 현황

■ 제2회 법제소위원회(내부마감재료)

제2회 법제소위원회(내부마감재료) 회의가 지난 12월 2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물 내부마감재로 관련 법령 개선에 관한 건
 - 사용자의 안전(소방 관련) 및 건강(실내 공기질)과 환경을 고려한 내부마감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산재되어 있는 내부마감재로 관련법령을 건축행위 단계별(설계부터 건축물소멸단계까지의 전 과정)로 정리하여 전반적 시스템을 먼저 파악한 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12회 법제위원회

제12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12월 2일 본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안)에 관한 건
 - 법(안)의 내용 중 건축물과 관계된 것은 건축법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도록 하는 원칙으로, 조분별로 검토의견을 정리하여 위원회 안으로 마련하기로 함.
- 제2호 : 주택법 사업계획승인 대상 조정에 관한 건
 - 주택법 개정(안)에 전반적으로 동의, 논리적인 보완을 위해 왕정환 위원이 정리하고 위원장이 최종 검토하여 위원회 안으로 마련하기로 함.
- 제3호 : 혁신도시 공공청사 에너지절약 설계 가이드라인(안)에 관한 건
 - 에너지 성능검토서의 건축부문을 보완하여, 각 부문별로 확인하는 대신 건축사가 총괄·확인하는 서식의 틀 등의 의견을 위원회 안으로 마련하기로 함.
- 제4호 : 2010년도 법제위원회 사업예산에 관한 건
 - 원안대로 법제위원회의 안으로 정하기로 함(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검토한 후 최종 안으로 결정)
 - ▷우리협회의 미래를 대비하여 분야별 “연구용역사업”을 꼭 진행시켜야 하며, 그에 따라 법령개정 등의 대정부 논리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제5호 : 기타의 건
 - 건축사의 건축물 설계대상 홍보 필요

- ▷일부 회원들이 건축법상 건축사의 건축물설계대상에 대하여 혼돈이 있으므로 건축법 제23조제1항의 정확한 해석으로 ‘모든 건축물의 신축은 건축사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홍보’해야 함.
- 건축허가도서 중복제출 문제에 관한 건
 - ▷현재 세움터 이외에도 자치단체에 중복으로 허가도서를 제출하여 회원들이 이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제기 및 대책 검토가 요구됨.

■ 제4회 행정위원회

제4회 행정위원회 회의가 지난 12월 3일 본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회계규정 중 개정규정안에 관한 건
 - 추조심의 내용을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
 - ▷개정안 제19조(지출원인행위) 제3항 삭제
 - ☞ 지출원인행위를 한정하는 것은 회장의 재량권을 축소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예산은 목내 범위내에서 대내외 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임.
 - ▷제73조 현행대로
 - ☞ 현행 제73조의 해석은 1년의 수익대비 지출금액에서 잔여예산인 잉여금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것임. 운영자금을 차입하는 등 매년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동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정은 불필요함.
- 제2호 : 회관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건
 - 회관관리규정과 연계해서 좀 더 검토하기로 함.
 - ▷회관관리규정과 연계해서 검토 필요
 - ▷회관관리의 연속성을 위해서 위원회의 임기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제3호 : 연구용역 관리지침 제정에 관한 건
 - 건축연구원 운영규정과 같이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함.

- ▷건축연구원 운영규정상(가칭)건축연구용역관리위원회를 두어 연구용역과제의 선정 및 관리를 하도록 하고, 연구용역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동 위원회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음.

■ 제4회 재경위원회

제4회 재경위원회 회의가 지난 12월 3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2010년도 임시예산 심의에 관한 건
 -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제출한 2010년도 1~2월 임시예산(안)을 주요 사안별로 검토한 후 원안대로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
- 제2호 : 추대회원 제도에 관한 건
 - 회원의 권리와 의무 및 향후 협회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대회원에게 일반 회원과 동일한 회비를 부과하고, 별도의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추대회원제도 개선을 이사회에 건의하기로 함.
- 제3호 : 2009년도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예산집행에 관한 건
 -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사업부 부족예산을 행사사업비 예산총액 범위 내의 절감예산에서 목내전용하여 사용하기로 함. 다만, 영화제 사업결과 평가시 건축영화제의 문제점과 존재문제 등을 이사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 기타사항 : ‘국외건축사 초청강연회 개최 경비’ 임시예산안 추가에 관한 건
 - 캐나다 밴쿠버 올림픽 선수촌 설계 Roger Bayley 건축사 초청 강연회 개최 경비(300만원) 임시예산 반영은 동 강연회 개최의 필요성을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임시예산(안)을 조정하기로 함.

■ 제1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제1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11월 27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0년도 임시예산 심의
 - 일반회계와 10개 특별회계 2010년 1~2월 임시예산(안)을 주요사안별로 검토한 후 원안대로 재경위원회에 제출기로 함.
- 제2호 : 2010년도 예산편성등 일정계획 안협의
 - 2010년도 예산안 편성이 예년에 비해 시기적으로 지연된 점을 감안하여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총회 등의 시기에 맞도록 일정을 추진기로 함.
- 제3호 : 추대회원 제도에 관한 건
 - 추대회원에 대한 회비면제 제도의 개선을 건의하기로 하되, 추대회원들의 공로와 정서 등을 감안하여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병행하여 검토해 줄 것을 건의기로 함.
- 제4호 : 회계규정 중 개정규정안에 관한 건
 - 회계규정 개정안 중 일부를 자구 수정하고 행정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하되, 제12조 제2항 출납원 임명에 관한 사항은 현행규정을 유지하기로 함.

■제2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제2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12월 17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특별회계)에 관한 건
 - 2010년도 7개 특별회계 사업계획 및 예산(안)중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대체 토론하고, 차기 회의에서 회계별 세목별로 심의·조정하기로 함.
 - 1) 건축문화진흥사업회계
 - 2006년부터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집행하지 않은 '건축문화진흥 사업회계'는 폐쇄하는 것으로 재경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기로 함.
 - 2) APEC 등록건축사회계
 - APEC 등록건축사회계 예산안 세출예산안을 축소하거나, 새로운 세입재원을 발굴하여 세입·세출 균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차기

위원회에 담당위원장을 참석토록 요청하여 재논의하기로 함.

- 제2호 : 2010년도 일반회계 사업계획안에 관한 건
 - 각 위원회 등에서 제출한 2010년도 일반회계 사업계획 예산요구안에 대하여 주요 사안별로 의견을 논의하고, 쟁점 사업요구안을 제출한 위원회 위원장을 차기회의에 참석토록 요청하여 재협의하기로 함.

■제3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제3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12월 22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위원회 사업계획 예산요구안에 관한 건
 - 각 위원회에서 제출한 2010년도 사업계획 예산요구안 중 5개위원회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장으로부터 사업제안 설명과 의견을 듣고, 해당 사업계획 예산요구안을 1차 삭감 조정함.
- 제2호 :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특별회계)에 관한 건
 - 2010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중 '기금관리 운용회계' 및 '회관관리회계' 예산안을 축조·심의하고, '건축문화전당 건립'을 위한 '건축문화진흥사업회계'는 폐쇄하기로 함.

■제4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제4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12월 30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0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 관한 건
 - 2010년도 위탁관리업무회계 등 5개 특별회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축조·심의하고, 각 회계별 예산안중 이월금 수입부문은 2009회계년도 결산완료 후 확정되는 결산이월금으로 수정토록 함.

- 제2호 :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심의에 관한 건
 - 일반회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1차 축조·심의하여 세출예산안중 회의비와 관리비 부문을 일부 감액하고, 사업비 예산안부터 차기회의에서 계속 심의하기로 함.

■제15회 사업위원회

제15회 사업위원회 회의가 지난 12월 15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차년도 전시장소 및 기간에 관한 건
 - 코엑스에서 'G20' 개최로 인하여 전시장소 및 기간을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는 사안을 협의한 결과, 몇가지 대안이 마련되었지만 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차기 회의시 추진결과를 재보고하기로 함.
 - ▷대안1) 일산 킨텍스에서 10월 중하순에 개최
 - ▷대안2) 코엑스에서 8월 중순에 개최하는 홈텍스와 동시 개최

■제6회 국제위원회

제6회 국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12월 16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0년 해외 교류단체 초청에 관한 건
 - 제44회 정기총회 시에는 해외 교류단체 중 일본건축사회연합회를 초청하고, 일본건축가협회(JIA), 몽골건축사협회(UMA), 미국건축사협회(AIA), 유럽건축사협회(ACE)의 초청계획은 차기 회의에서 상세한 계획을 협의하기로 함.
 - ▷제44회 정기총회 시(2010. 2. 25) 일본연합회 회장에게 명예회원증을 수여하는 것을 건의하기로 함.
 - ▷JIA, AIA, ACE의 초청은 2010 건축의 날(9. 25) 행사와 가급적 연계하여 추진하고, 초청대상·명예회원증 수여·주요일정 등 세부사항은 차기 국제위원회

에서 협의기로 함.

▷UMA는 2010년 중 초청 및 방문 교류행사를 모두 개최하되, 시기 및 명예회원증 수여여부는 차기 국제위원회에서 협의기로 함.

• 제2호 : 2010년 국제사업비 예산(안)에 관한 건

-2010년 국제사업비 예산(안)을 예산결산 소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함.

• 제3호 : 건축사법 영문번역본 검토에 관한 건
-국토해양부의 요청으로 정재욱 위원장, 최재희 전문위원, 김성민 위원이 검토·작성한 건축사법 영문번역본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되, '건축사' 용어의 영문표기에 관한 사항 및 일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번역내용은 국제위원회의 추가의견을 제출하고, 법제위원회의 추가적인 검토를 받을 것을 건의하기로 함.

▷번역문 중 '건축사'의 영문표기가 certified architect로 되어 있는데, 이는 '건축사'의 동의어가 아니며, '건축사' 칭호의 올바른 사용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 즉, 시험과 등록을 통한 정규자격을 갖춘 건축사를 certified architect라 표시한다면, 정규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certified'를 제외한 architect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명료한 번역이라 할 수 없음. 그러므로 '건축사' 칭호의 영문번역은 법제위원회의 추가검토를 거친 후 법·제도적 측면을 고려한 표현으로 조율하여 제안할 필요가 있음.

■ 제11회 정책위원회

제11회 정책위원회 회의가 지난 12월 24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협력업체 업역 조율과 수입구조 개선(안)에 관한 건

-건축사의 업역 조율(coordinate) 업무를 전문화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대가 없는 책임 구조를 개선하여 건축사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고, 회원의 수입구조 개

선에도 도움을 주고자 '협력업체 업역 조율과 수입구조 개선(안)' 사업을 제안함.

• 제2-1호 : 제 위원회간 실질적 연계/조율/검증 방안에 관한 건

-모든 위원회 안건을 검토하여 정책위원회 회의자료로 작성하기로 함.

• 제2-2호 : '지방건축사회'의 전문연구벨트화 검토(위원장)/저작권, 생태기술 등/참여의식 제고, 자발적 연구 유발 등에 관한 건

-본부 위주의 연구, 정책 제안 및 추진 등으로 지방건축사회의 자발적 참여의식 부족과 연구 및 지식정보화 기능의 저하, 본부예외의 의타의식 등 문제점이 있는 바, 전문벨트화를 통해 상호 이해증진 및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자 함.

■ 제6회 회관관리소위원회

제6회 회관관리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12월 30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2010년도 회관관리회계 예산(안) 편성에 관한 건

-2010년도 회관관리회계 수지예산(안)은 일부 조정하여 협의 결정함.

• 제2호 : 협회 회의실 사용에 관한 건

-다음 회의 일정상 협의하지 못함.

■ 제1회 통합추진위원회

제1회 통합추진위원회 회의가 지난 12월 16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2회 이사회(09.12.9)에서 선임된 통합추진위원회 위원 9인 중에서 위원장(3인) 후보와 간사를 아래와 같이 선정함.

-위원장 후보(3인) : 부회장(강성익, 김영수), 장양순 이사

-간사 : 전영철 상근이사

• 위원장은 후보자 3인 중 1인을 회장이 추천키로 하고, 차기 이사회 의심의·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기로 함.

• 한국건축가협회에서 각 단체의 대표단을 6명으로 구성키로 요구하였으나, 우리 협회 대표단은 6명 모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위원장) 9명 모두를 대표단 명단으로 제출하기로 함.

-다만, 협회 내부적으로 수도권 위원(위원장) 6명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9명 중 시간이 되는 사람이 참석하기로 함.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표단을 3명 정도로 축소하는 방안을 3단체 통합대표단 회의시 제안하기로 함.

• 09.12.11 한국건축가협회에서 보낸 「건축단체 통합에 관한 성명서」의 회신내용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여, 동 문건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이번 회의시 통합에 대한 우리 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하기로 함.

• 통합에 대한 전체 회원들의 의견도 중요하므로 의견수렴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일부 회원들이 참가한 통합반대회원모임에서 작성한 「정의와 진실 무엇인가?」 란 책자에 나온 질문내용에 우리 협회에서 작성한 Q&A를 토대로 답변내용을 작성하기로 함.

-이를 통해 통합에 대해 반대하는 일부 회원들을 설득.

-질문 내용 중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임원 시도회장 및 대의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

■ 제2회 통합추진위원회

제2회 통합추진위원회 회의가 지난 12월 23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내년 2월 정기총회 전까지 통합에 대한 확실한 명분을 얻을 수 있도록 통합일정대로 전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추진하는 방안을 1월 이사회에서 협의하기로 함.

-의견수렴방법 : 무기명서면조사

-의견수렴기간 : 2010.1.20~1.29일까지

-설문지 배부 및 취합방법 :

전체 회원수만큼 넘버링 후 행방으로 각 시도별로 회원수에 따라 배부

(우편발송 및 취합은 각 시도건축사회에서 시

행하고취합후본협회이송)

-의견수렴시 법제도 개선에 관한 협회의 주요 현안(설계겸업, 건축법인 등에 대한 사항과 같이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회원의견수렴에 대한 최소기준은 전체회원의 50%이며, 참여한 회원의 70~80%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만 통합에 관한 안건을 이번 총회에 상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반대의견에 대한 답변자료(Q&A)는 오늘 논의된 대로 수정·보완키로 하고, 이 중 다음 각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통합추진대표자 회의에서 우리 협회안으로 요구하기로 함.

- 1) 통합이행 및 운영규정 제3조(임원선출)3항에서 기존 상임이사비율(6:6:3)에서 우리 협회측 상임이사 1인에 대한 추가 요구
- 2) 통합이행 및 운영규정 제2조(운영제4항)에서 한국건축가협회와 새건축사협회의 법인을 청산하는 방향으로 문구가 정리되도록 요구

■ 제3회 통합추진위원회

제3회 통합추진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6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통합이행 및 운영규정은 3단체가 당초 합의(09.2.9)한 안과 제3차 통합추진대표자 회의(09.12.23)때 논의된 조정안 및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가지고 아래와 같이 축조심의 하였음.

- 전체적인 이행규정의 큰 틀은 가급적 대표자회의에서 논의된 조정안을 존중하되,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수정·보완함.

• 제1조(목적) 통합창립총회의 시행시기와 관련한 문구를 아래와 같이 오늘 논의한 3가지 방안가지고 제4회 대표자회의(10.1.8)에서 논의

- 제1안 : 가협회의 요구대로 '2010년 6월에 시행'
- 제2안 : 날짜를 조정하여 '2010년 10월에 시행'
- 제3안 : 조정(안) 대로 '2010년에 시행되는'

• 제2조(운영)제2항에서 '결정사항'을 '준비사항'으로 변경

• 제2조(운영)제4항에서 한국건축가협회 및 새건축사협회의 법인 청산부분과 관련한 문구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안을 가지고 내일 3단체장 조찬회의(10.1.7)에서 논의하기로 함.

- 제3조(임원선출) 등 제3항에서 건축사협회의 상임이사 1인을 추가하는 검토안을 각 단체에서 모두 동의함에 따라 검토사항을 조정(안)으로 변경

- 제3조(임원선출) 등 제6항에서 조정(안) 중 '감사 중에 2011년에 임기가 남은 각 1인을 당연직으로 한다.'를 '감사 중 선임자를 당연직으로 한다.'로 변경

- 제4조(규정운영) 등 제1항 제2호의 부회장의 담당업무는 기존대로 조정(안)으로 함.

- 제10조(업무별 분할결재)는 검토사항을 조정(안)으로 변경

- 제12조(기타사항)은 '창립준비위원회'를 '통합창립준비위원회'로 수정함.

- 검토사항의 부칙 제4조(규정이의) 내용의 적용은 삭제함.

• 단체통합에 대한 회원의 의견수렴 방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논의되었으며, 설문지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초안을 마련한 후 차기 회의에서 검토키로 함.

- 기명여부: 무기명

- 설문내용 및 명칭: 2가지안으로 하여 이사회에 상정

- 제1안) 통합에 관한 사항만 설문위원장명(의)
- 제2안) 통합에 관한 사항 이외에 주요 현안(설계검리 분리문제, 사무소등록 기준, 전국건축사대회 등)을 같이 설문(협회장명(의))

- 시행방안에 대한 의견

• 설문지는 서면으로 하고 통합의 취지, 통합추진경과(현재 통합추진위원회 구성배경 등) 등을 간략히 요약하고 뒤에 설문내용 첨부

☞ 추진경과 중 통합추진위원회는 기수로 표기(현재 제3기)

• 첨부자료는 Q&A 등을 포함하여 본협회 및 해당 시도건축사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 설문조사는 넘버링 한 설문지를 각 시도건축사회에 발송하고, 시도회장들이 적극적으로 회원들을 독려하고 우편, 팩스, 전화 등을 활용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한 후 해당 결과를 본협회에 통보(필요한 예산은 본협회에서 지원)

• 설문결과 전체회원의 10% 이상이 설문에 참여하고 그 중 80% 이상이 통합에 찬성한다면 단체통합에 관한 의안을 이번 총회에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제4회 통합추진위원회

제4회 통합추진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11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오늘 개최된 제5회 통합추진대표자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협의된 안에 대해서 각 위원들에게 설명하였으며, 이에 동의함.

- 다만, 제2조(운영)제4항에서 가협회와 새건축협회의 청산문제를 합병으로 변경하여 문안조정을 한 부분에 대한 각 단체의 변호사 자문결과가 상이할 경우에는 M&A 전 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기로 함.

• 통합이 될 경우 타 단체의 건축사 회원들이 협회에 가입할 경우 기존 폐업위로금을 받

조정(안)	통합추진위원회(안)
<p>제2조(운영) ①~③ 내용생략</p> <p>④ 협회의 통합창립총회 이후 2011년 2월28일까지는 건축3단체를 각각 운영하되, 이 기간동안 한국건축가협회와 새건축사협회는 통합정관으로 정관개정을 하여 법인청산을 추진하며 모든 자산과 각종행사의 권리를 협회에 귀속시키며 청산시기, 절차 및 내용은 통합원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p>	<p>제2조(운영) ①~③ 내용생략</p> <p>④ 협회의 통합창립총회 이후 2011년 2월28일까지는 건축3단체를 각각 운영하되, 이 기간동안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 및 새건축사협회의는 통합정관으로 정관을 개정하고 법인청산을 하여 모든 자산과 각종행사의 권리를 협회에 귀속시키며 청산시기, 절차 및 내용은 통합원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대한건축사협회는 법인청산이 불가하므로 예외로 한다.</p>

는 회원들의 자산가치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1월 이사회에서 '폐업위로금 지급증서'를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함. 또한, 통합 이후에도 기존 회원들의 자산가치의 변동이 없다는 통계자료를 작성하기로 함.

- 회원들의 설문조사 방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논의하였으며, 이번 1월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
- 기명여부 : 무기명
- 설문내용 : 통합에 관한 사항에 이외에 3가지 주요현안(설계 · 감리분리, 사무소등록 기준, 법인대형화)을 추가로 질의
- 시행방안에 대한 의견
 - 설문자료는 넘버링후 설문지를 각 시도 건축사회에 발송하고, 시도회장들이 적극적으로 회원들을 독려하고 우편, 팩스, 전화 등을 활용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한 후 해당 결과를 본협회에 통보(필요한 예산은 본협회에서 지원)
 - 첨부자료는 Q&A 등을 포함하여 본협회 및 해당 시도건축사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 설문조사는 이번 시도건축사회장 워크샵(10.1.19~21)에서 통합에 대한 사항과 설문내용 등을 설명하여 각 시도에서 목표 이상으로 많은 회원들이 참여 · 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함.

■ 제1회 통합추진대표자 회의

제1회 통합추진대표자 회의가 지난 12월 18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각단체 대표단은 6명씩으로 하되, 책임을 지고 모든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하기로 함.
- ☞ 우리 협회는 대표단을 9명으로 보고하고 동 인원중 6명이 참석하기로 하였음.
- 통합추진대표자회의 제1차 활동시한을 2월 28일까지로 하고, 동 기한까지 최선을 다해 단체통합을 추진하기로 함.
-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체 회원의 의견수렴을 하여야 하며, 회원 의견 수렴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

기로 함.

-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논리적 의문점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들이 작성한 '정의와 진실 무엇인가?'란 책자에 나온 질문에 대한 사항을 우리 협회에서 정리한 후 차기 회의시 이에 대한 해법에 대해 논의하기로 함.
- 제2회 통합추진대표자회의는 '09.12.24일 07:30분에 개최하기로 하고, 회의 아젠다는 책자에 대한 질문들을 토대로 건축사협회에서 정하기로 함.

■ 제2회 통합추진대표자 회의

제2회 통합추진대표자 회의가 지난 12월 24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내년도 1월 20일 경에 회원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기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관개정(안)과 통합이행 및 운영규정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함.
- 통합이행 및 운영규정은 3단체가 당초 합의(09.2.9)한 것과 이후 합의(09.9.1)한 내용을 가지고 축조심의 하였으며, 축조심의 큰 틀은 가급적 3단체가 당초 합의(09.2.9)안대로 유지키로 하되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조항에 대해서 추가 · 조정하기로 함.
- 9월에 합의(09.9.1)된 신설조항중 제3조(임원선출)제7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추가
- 제2조(운영)제4항은 당초 합의안으로 하거나 9월 합의안 중 '법인청산 또는 통합정관'의 문구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
- 제3조(임원선출)제3항은 기존에 합의한 상임이사수를 사협회(6), 가협회(6), 새건협(3)에서 사협회(7), 가협회(6), 새건협(2)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상임이사 1인을 추가한 16인으로 하여 사협회(7), 가협회(6), 새건협(3)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단체별로 의견수렴을 통해 검토
- 제10조(업무별 분할결재)는 9월 합의안으로 변경
-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일부 문구나 변경된 낱자 등을 조정

- '반대의견에 대한 답변자료'는 각 단체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보충할 내용이 있으면 의견을 주기로 함.

■ 제3회 통합추진대표자 회의

제3회 통합추진대표자 회의가 지난 12월 28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건축사법 개정의 일정연기와 우리 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 대표회장 임기에 따른 문제 등을 고려하여 당초 합의한 통합원년기간을 1년 늦추기로 함.
- 당초(2010년 3월 1일~2011년 2월 28일까지) → 변경(2011년 3월 1일~2012년 2월 28일까지)
- 통합이행 및 운영규정은 3단체가 당초 합의(09.2.9)한 제1차 합의안과 이후 변경된 제1차 조정(09.9.1)안, 제2회 통합추진대표자회의때 논의(09.12.24)한 제2차 조정안을 가지고 아래와 같이 축조심의하였음.
- 전체적인 이행규정의 큰 틀은 제1차 합의안을 토대로 하고 통합원년의 변경에 따라 관련 조항 수정 (제1조, 제2조제1항제3항제4항, 제3조제5항제6항, 제7조, 제11조, 부칙제2조, 제3조)
- 제2조(운영)제4항에서 '통합정관으로 정관개정을 하여'란 문구를 '법인청산'앞에 추가
- 제3조(임원선출)제3항은 기존 상임이사수 15인(6:6:3)에서 우리 협회측 상임이사 1인을 추가하여 16인(7:6:3)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 제4조(운영규정)는 제1차 합의안으로 하되, 부회장의 담당업무 등에 대해서 건축사협회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
- 제7조(자산)은 제1차 합의안으로 함.
- 제8조(회비)는 제1항은 제1차 합의안으로, 제2항은 제1차 조정안으로 함.
- 제10조(업무별 분할결재)는 건축사협회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
- 제11조(정관개정) 제1차 조정안으로 함.
- 제12조(기타사항) 제1차 조정안으로 함.

통합추진위원회 합의안(10.1.6)	3단체장 조찬회의(10.1.7)에서 건축가협회측이 제안한 안	검토(안)
④협회의 통합창립총회 이후 2011년 2월28일까지는 건축3단체를 각각 운영하되, 이 기간동안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 및 새건축사협회의는 통합정관으로 정관을 개정하고 법인청산을 하여 모든 자산과 각종행사의 권리를 협회에 귀속시키며 청산시기, 절차 및 내용은 통합원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대한건축사협회는 법인청산이 불가하므로 예외로 한다.	④협회의 통합창립총회 이후 2011년 2월 28일까지는 건축3단체를 각각 운영하되, 이 기간동안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 및 새건축사협회의는 통합정관으로 정관을 개정하고 모든 자산과 각종행사의 권리를 협회에 귀속시키며 필요한 청산업무, 시기, 절차 등은 통합원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④협회의 통합창립총회 이후 2011년 2월 28일까지는 건축3단체를 각각 운영하되, 이 기간동안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 및 새건축사협회의는 통합정관으로 정관을 개정한다. 또한 통합원년에 모든 자산과 각종행사의 권리를 협회에 귀속시키며, 서울 서초구 서초1동 1603-55 건축사회관을 주사무소(주소제지)로 하여 법인통합에 필요한 청산업무, 시기, 절차 등은 통합원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4조(규정운영 등) 부회장의 업무는 합의안대로 됨.
- 제10조(업무별 분할결재)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검토한안으로 변경
- 통합이행 및 운영규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3단체 회장이 공식적인 합의절차를 이행하기로 함.
- 제5회 통합추진대표자회의는 '10.1.11(월) 07:30에 개최하기로 함.

■ 제5회 통합추진대표자 회의

제5회 통합추진대표 회의가 지난 1월 11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통합이행 및 운영규정은 3단체가 당초 합의(09.2.9)한 안과 1차협의안(10.1.6)및 제4회 통합추진대표자회의(10.1.8)에서 논의된 후 수정보완한 2차협의안(10.1.8)을 가지고 논란이 되는 몇 가지 항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축조 심의하였음.
- 통합원년이 끝나는 시점인 2012년 2월 28일이 윤달인 관계로 2012년 2월 29일로 수정함.
- 제2조(운영)제4항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았으나 기존 한국건축가협회와 새건축사협회의 통합방침을 3단체의 재산, 권리, 실적 등을 모두 승계하기 위해서는 법인청산이 아닌 3단체가 합병에 의한 방식으로

-기타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전회 회의결과와 동일함.

- 차기 회의에서는 3단 비교표를 합의안, 조정안, 비교로 표기하고, 비교란에는 검토사항을 기재하기로 함.

■ 제4회 통합추진대표자 회의

제4회 통합추진대표자 회의가 지난 1월 8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통합이행 및 운영규정은 3단체가 당초 합의(09.2.9)한 안과 제3회 통합추진위원회(10.1.6)때 논의된 조정안 및 3단체장 조찬회의(10.1.7)에서 건축가협회측이 제안한 안을 가지고 아래와 같이 축조심의하였음.
- 전체적인 이행규정의 큰 틀은 대표자회의에서 논의된 조정안으로 하되,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제시한 수정안을 참조하여 논란이 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수정·보완함.
- 통합이행 및 운영규정에서의 공통되는 다음 용어를 수정함.
- 제1조에서
- 대한민국건축사협회에 뒤에 '이하' 협회로 한다.'를 추가하고, 관련조항 변경
- '2010년에'를 '2010년 10월이내'로 변경
- 통합창립총회는 선언적 의미에서의 총회이므로 임원선출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따라서 '통합창립총회'를 '협회창립대회(이하) 창립대회'로 변경하고, 관

련조항 수정

-또한, '임원선출'을 '임원구성'으로 변경하고, 이와 관련한 세부조항의 조정은 제1회 통합추진대표자회의에서 논의된 제2차 합의안('09.9.1)을 토대로 변경

- 제2조(운영)제2항에서 '대표단으로 구성된 통합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필요한 준비사항은 통합창립준비위원회에 위임한다.'를 '통합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로 변경
- 제2조(운영)제4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되, 법인청산과 관련하여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 자문변호사를 통하여 법률자문 이후에 차기 회의시 재논의 해보기로 함.
- 제3조(임원선출 등)제6항에서 '감사 중에 2011년에 임기가 남은 각 1인을 당면직으로 한다. '별' 감사중 선임자를 당면직으로 한다.'로 변경

(10.1.8 협의안)	(10.1.8 변호사 의견)	(10.1.11 협의안)
제2조(운영) ①~③ 내용생략 ④협회의 창립대회 이후 2011년 2월 28일까지는 건축3단체를 각각 운영하되, 이 기간동안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 및 새건축사협회의는 통합정관으로 정관을 개정한다. 또한 통합원년에 모든 자산과 각종행사의 권리를 협회에 귀속시키며 서울특별시 서초1동 1603-55를 주소제지로 한 법인통합에 필요한 청산업무, 시기, 절차 등은 통합원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제2조(운영) ①~③ 내용생략 ④협회의 창립대회 이후 2011년 2월 28일까지는 건축3단체를 각각 운영하되, 이 기간동안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 및 새건축사협회의는 통합정관으로 정관을 개정한다. 위 통합정관개정과 동시에 대한건축사협회는 대한민국건축사협회(협회)로 명칭변경을 한다. ⑤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1동 1603-55로 정하고 법인통합에 필요한 청산업무, 시기, 절차 등은 통합원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조(운영) ①~③ 내용생략 ④협회의 창립대회 이후 2011년 2월 28일까지는 건축3단체를 각각 운영하되, 이 기간동안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 및 새건축사협회의는 통합정관으로 정관을 개정하여 통합한다. ⑤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1동 1603-55로 정하고 법인합병에 필요한 업무, 시기, 절차 등은 통합원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추진해 하브로 아래와 같이 문구를 수정하고 각 단체가 13일 이전까지 자문변호사를 통하여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통보키로 함.

- 의견이 일치할 경우에는 다음 회의시 합의서를 작성키로 하고, 만일, 각 단체의 의견이 분분할 경우에는 전문 M&A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함과 동시에 긴급회의를 소집한 후 변호사도 같이 동석시켜 대안을 모색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함.
- 제2조(운영)제7항에서 통합원년 이전에는 통합원년 이사회가 구성되기 이전이므로 통합원년의 협회운영 및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통합원년 임원 회의에서 결정키로 하고 관련문구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
- '예산안은 통합원년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를 '예산안은 통합원년 임원회의에서 심의·의결하며, 의결은 통합원년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결방법에 따른다.' 로 변경
- 각 단체 임원의 임기를 똑같이 하기 위해 통합정관 부칙상에 '기존 3단계 임원의 임기는 이 정관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로 한다.' 는 문구를 삽입하기로 함.

2010년도 시무식 개최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2010년 1월 2일 오전 11시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대한건축사협회와 서울시건축사회, 서울건축사복지회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갖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대한건축사협회 최영집 회장은 신년사에서 "2010년 경인년 새해에도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협회 임직원이 되길 바란다. 협회발전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건축사회 회장과 서울건축사복지회 회장의 신년사와 우리 협회 역대회장의 덕담이 섞인 신년사가 있었다. 3개 단체 임직원은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자는 구호와 함께 떡국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 CEO과정 수료

우리 협회는 정부 지원을 받아 추진한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 CEO과정' 수료식을 구립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수료식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개강한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 CEO과정에서 100명 중 96명이 친환경 전문가로 수료됨에 따라 개최됐다. 김광현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 원장(서울대 교수)은 축사에서 "이번 CEO과정에서 1기 수료를 받은 건축사들은 최초의 친환경 전문가다. 건축 실무에도 친환경을 위한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글로벌건축 최고위과정 제5기 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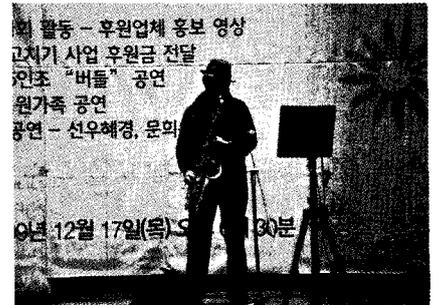


서울특별시건축사회(회장 김영수)는 지난 12월 17일 '글로벌건축 최고위과정(GAEC)' 제5기 수료식을 건축사회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과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동기회 김윤수(주.태진 핸드레일 대표이사) 회장이 공로상을 수상했으며, 38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 문의: 서울건축사회 기획사업팀

02-587-7061, www.sira.or.kr

2009 사랑나눔 송년의 밤



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구립 17일 '사랑나눔 송년의 밤' 행사를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건축사회의 회원 및 회원가족, 건축계의 대외인사 등을 초청해 2009년 한 해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무의탁 소년·소년가장 세대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사랑의 집고치기 후원금을 마련코자 개최한 행사였다.

이날 송년의 밤에는 1부 기념식에 이어 회원 및 회원가족의 문화공연과 유명가수들의 열띤 공연으로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건축사 및 건축사협회의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알리고 회원 간의 친목 도모 및 대내외 건축계 인사와의 교류의 장이 됐다. 서울건축사회는 모금된 후원금 1천만원을 해비타트 서울지회에 기부했다.

대구건축사회, 건축허가 관련 디자인 자문제도 시행

대구광역시건축사회(회장 신동철)는 구립 1일부터 대구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 자문을 받아 '자문결과서'를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하는 건축물 '디자인 자문 제도'를 시행했다. 이번 제도는 지역의 건축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적